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

제 안 설 명

이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은 대형택시 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형승합택시와 대형승용택시 요금제가 달라 이용시민 불편이 있어, 대형승용택시에도 사업경영자가 시장에게 특정 운임·요금을 신고하는 일명 “자율요금제”를 적용하여 이용 혼란을 막고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